

2026 정부조직 개편 완벽 반영,  
필수·PAST 전환 이후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 완벽 대비

서  
술  
크  
지

01

총론·정책



2027 김중규  
선행정학 이론

## “2027 김중규 선행정학 이론을 펴내며”

행정학은 이야기입니다.

그저 단편적인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공직에서 필요한 상식과 이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한 편의 스토리입니다. 행정학의 바 이블, 선행정학은 편린적인 행정학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방대한 행정학을 이야기처럼 연결시켜 재밌게 풀어나간 책입니다. 강의 또한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전개되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의 행정학 출제경향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정형화된 문제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새롭고 참신하게 응용된 문제, 종합형 문제, 스토리 문제, 추론형 사례문제, 새롭게 이슈가 되는 신경향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득점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2022년부터는 9급 행정학이 행정직렬 필수과목이 되면서 난이도도 높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2023~2026년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27 김중규 선행정학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7급이 PSAT으로, 9급 행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 이후 9급과 7급 시험 모두 행정학 난이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난이도에 대비하여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법령문제와 실무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면서 난이도가 더욱 높아진 점을 감안, 이에 대비한 보강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2024~2026년도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확장되어 출제될 영역까지 예측하여 내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편된 제도나 법령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22.1.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비롯하여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최근에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정부조직법」 및 국가재정 관련 통계기준(통합재정, 국가채무, 재정준칙 등) 등 최근 행정학의 핫이슈를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9급 행정학이 필수로 전환되면서 과거보다 상당히 깊이 있게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문강좌나 핵심적인 큰 줄기에서 약간 벗어난 디테일한 부분(법령조문이나 이론 각론 등)까지 완벽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딱딱한 기본서의 틀을 벗어나 공부하면서 헛갈리는 부분들,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암기법, 이해 위주로 공부할 부분,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편하게 볼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제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최근 대표기출문제들을 소개하였으며, 절마다 OX-지문풀이를 두고, 장마다 장 한 눈에 보기를 수록하여 절단위 복습과 장단위 복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물론, 행정학의 큰 그림이 절마다, 장마다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이론서에 이어 곧 출간될 「2027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과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장·절 편제를 일치시키고, 전 3권으로 분권 출간되었습니다.

**여덟째,** 「2027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과 부교재인 「2027 김중규 원픽 선행정학」 등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학습효과를 한층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선행정학의 모든 교재가 그렇지만, 특히 이번 2027 이론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쉽게, 예시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예시를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침삭으로 표기하여 알기 쉽게 수험생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구성하였습니다.

**열째,**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신경향 내용(재정준칙, 다양성 관리, 통합재정, 공공가치관리론, 넛지이론, 규제개혁,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공공기관,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재정립운동, 정책평가 실험설계, 지방재정분권, 지방사무배분원칙 등)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마지막으로 최근 고난도 원인이 되고 있는 법령문제에 대비하여 그동안 빈출되어온 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외에도 부수적인 법령들까지 행정학 관련 법령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2027 선행정학은 어떤 난이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모든 것이 선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과 저를 행정학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소통의 장, 담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더욱 새롭고 완벽해진 모습으로 출간된 2027 선행정학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27 선행정학 교정에 힘써준 카스파 수석 조교들이자 제자인 은선, 유리, 지운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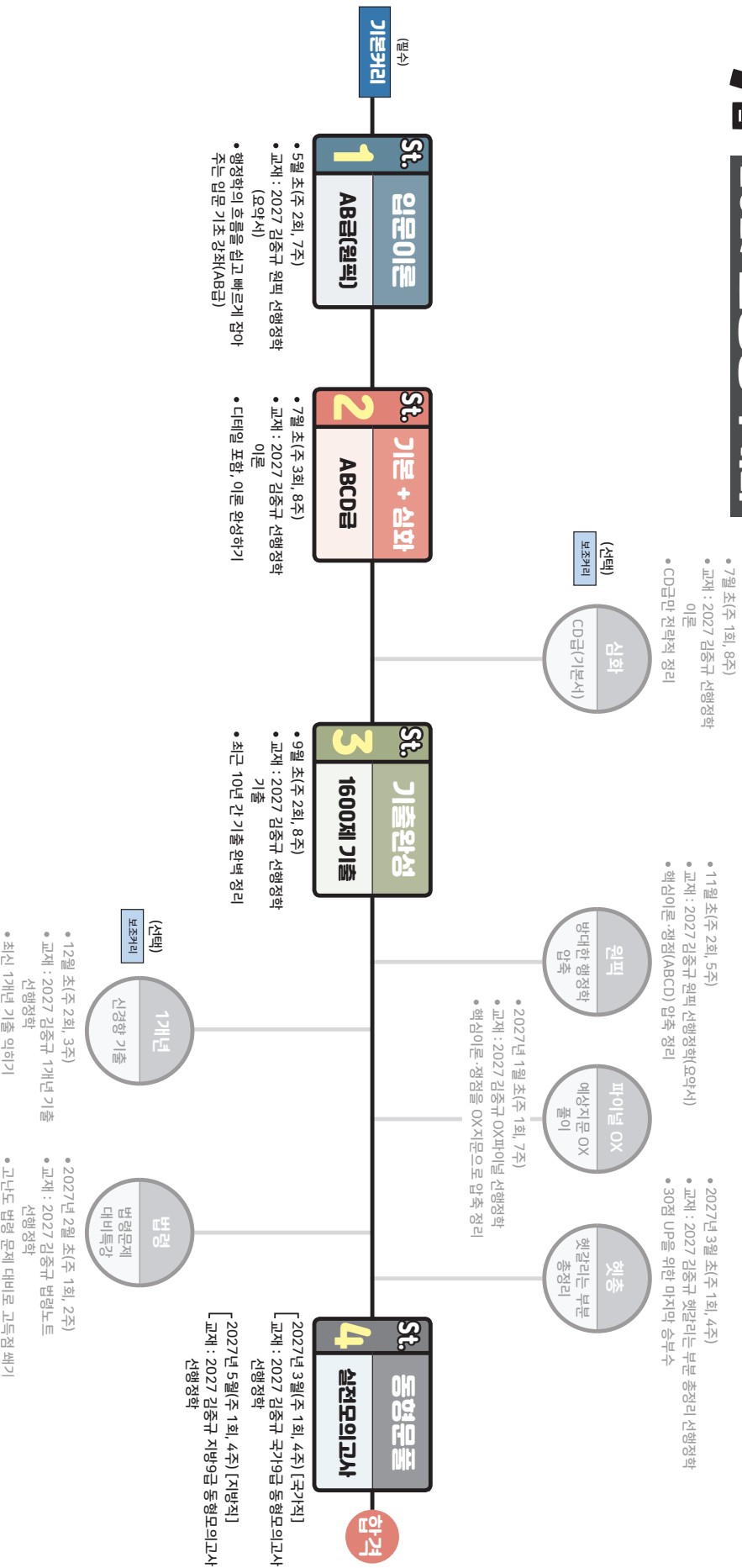
선행정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밌고 명쾌하고 올바른 일등 행정학입니다.

Return to 필수, Return to 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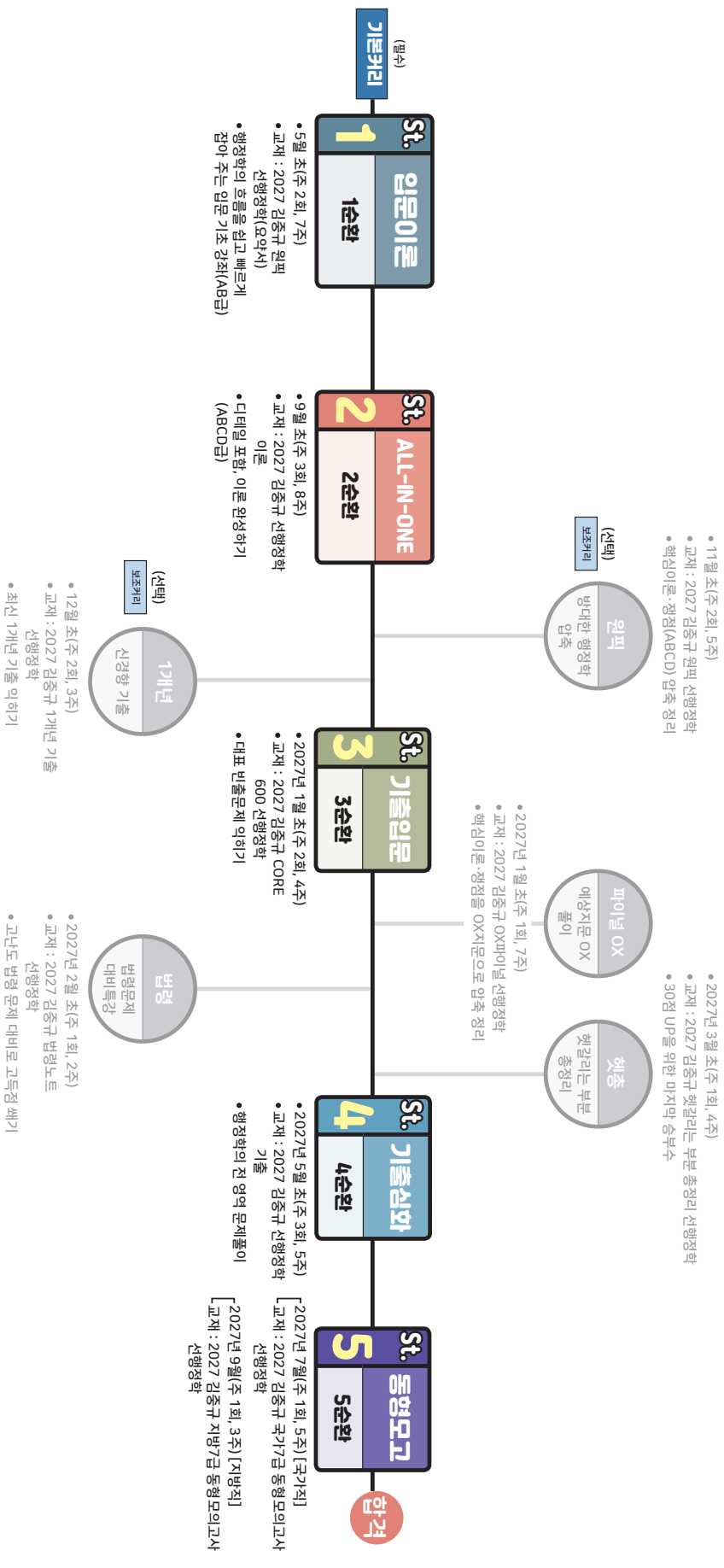
2026.6.22. 카스파 연구실에서

김중규

# 9급 2027 선형정화 커리



# 7월 2027 선행정화 커리



기술체크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 하는 위원회는? 2024 행정사

- ① 공정거래위원회
- ② 국민권익위원회
- ③ 금융위원회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답 ④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의 경우 종래에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였지만 2020. 8.5.부터는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조직법」 개정(2020. 6.9.)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음. 그러나 이들 2위원회를 포함한 6개 위원회(중앙행정기관)는 모두 「정부조직법」 상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들은 아님.

2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조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아님.

2. 단점

- (1) 기밀 누설 우려 : 토의과정에서 기밀 누설 우려
- (2) 경비 · 시간 · 노력의 낭비 :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회의 준비에 많은 시간 소요
- (3) 타협적 결정 : 강경한 의견에 압도되거나 대인관계를 고려한 결정
- (4) 책임의 분산 : 구성원이 복수이므로 책임성이 결여되어 무책임한 의사결정 우려
- (5) 사무기구의 우월화 : 사실 확인 및 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무기구가 결정에 주도적 영향 행사
- (6) 정책결정의 정당화수단 : 우리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위원회들이 남설되어 행정부의 정책결정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악용

● 우리나라 위원회의 유형별 소속 구분

가볍게 이해하기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span style="color: blue;">▶</span> 대-교방규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span style="color: red;">■</span>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span style="color: red;">■</span> <span style="color: blue;">▶</span> 개금방국공원
부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재정경제부) 정보공개위원회(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행정안전부)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무역위원회(산업통상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독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span style="color: red;">■</span>

\*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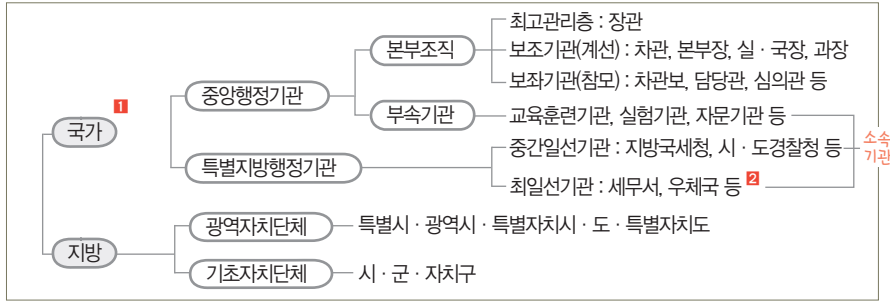
09 정부조직체계

기술이력 | 2022 지방9급 등 총16회 C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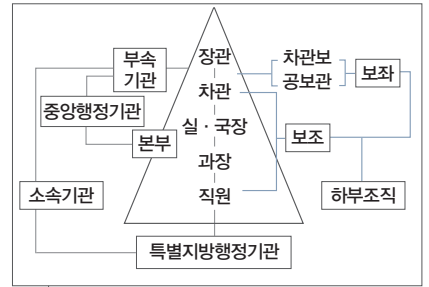
1 의의

- (1) 정부조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조직
- (2) 정부조직 법정주의 : 정부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의 설치에 법령의 근거가 필요  
↳ 정부조직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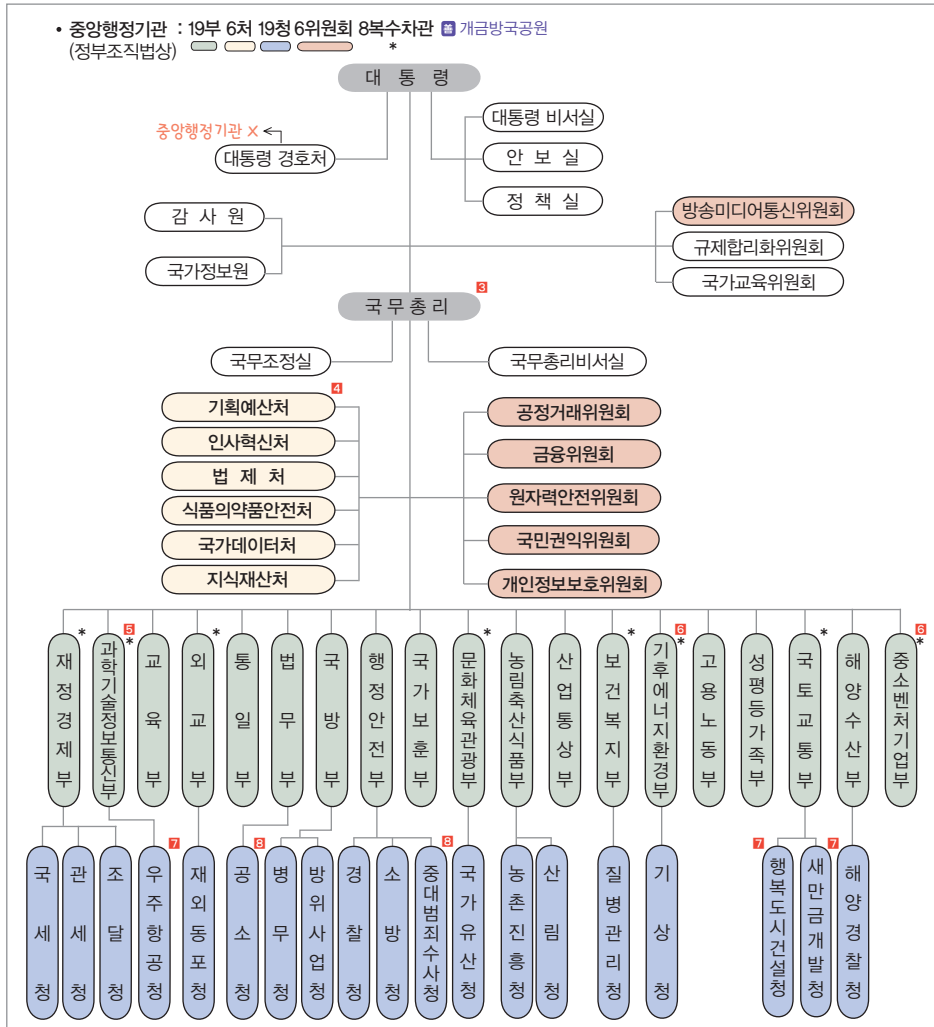
## 2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 1 우리나라 국가행정기관의 체계



### ●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2026.10.2. 기준)



읽기하기 4 국관조

(1) 중앙행정기관<sup>9</sup>: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상설행정기관. 현재 4가지 유형이 있음.

① 부(部): 소관사무의 결정과 집행, 부의 장은 국무위원, 부령 발동 가능

### 2 자치단체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보건소, 소방서 등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아니라 자치단체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임.

### 3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됨. 반면 차관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됨.

### 4 기획예산처 신설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개편됨(2026.1.2. 시행), 기획예산처장관은 다른 처(차관급)와 달리 국무위원임.

### 5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시행)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가 신설되고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겸)가 폐지됨.

### 6 복수처관을 두는 부처(8개)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에 국문중기복재과외·복수

### 7 3청·6위원회의 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우주항공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전통적(이론상) 개념(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상설행정기관)과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종래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았으나 「정부조직법」 개정(2020.6.9.)으로 국민권익위 등 6개 위원회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3청과 6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은 아님.

### 8 검찰청 폐지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으로 검찰청이 공소청(기소전담, 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전담, 행안부소속)으로 분리·개편됨(2026.10.2. 시행).

### 9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행정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우주항공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막료부처**

현재 모든 처가 실제 막료부처는 아니며 실제 막료부처(교차기능조직)는 법제처(법제), 인사혁신처(인사), 행정안전부(조직·정원), 기획예산처(예산), 조달청(물자)임.

**2** **부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부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만, 부속관 자체로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없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외교부	국립외교원, 재외공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교육부	국가사편찬위, 중앙교육연수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주의**

6위원회와 3청(행복청, 새만금청, 우주항공청)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O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X

**4** **시행시기**

2025.10.1. 공포·시행(기획재정부 및 검찰청 분리·개편 제외)

**5**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2026.1.2. 시행

**6** **검찰청 분리·개편**

공포(2025.10.1.) 후 1년 뒤(2026.10.2.) 시행

**7**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2025.8.26. 시행

- ② **처(處)** : 부에 대한 지원·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막료부처 **■**로서 기획예산처(장관급)를 제외한 처장은 정무직(차관급). 처는 부령 대신 총리령 발동
- ③ **청(廳)** : 부의 기능 중 일부 집행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부에 소속된 외청, 청장은 정무직(차관급) 또는 특정직(경찰청장 등) **■**
- ④ **위원회** :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 **특별일선기관**
- (3) **부속기관** :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교육훈련기관, 자문기관 등)
- (4) **소속기관 **■****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과 부속기관
- (5) **보조기관** :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계선의 하부조직** : 차관 - 실·국장 - 과장 등)
- (6) **보좌기관** :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참모**)
- (7) **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 (8) **합의제 행정기관** :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설치 가능

**더보기**

-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 — 18부 4처 18청 6위원회 ⇨ 19부 3처 20청 6위원회
  - ① 국가보훈부 신설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② 재외동포청 신설 : 외교부 소속외청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 ③ 우주항공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 신설(2024.5.27.)
  - ④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개편(2024.5.17.)
  - ⑤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2024.6.27.)
-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 — 19부 3처 20청 6위원회 ⇨ 19부 6처 19청 6위원회
  - ①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개편 **■**
  - ② 검찰청 ⇨ 공소청(기소전담, 법무부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전담, 행안부 소속)으로 분리·개편 **■**
  - ③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 및 제2차관 신설
  - ④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
  - ⑤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 신설 및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겸) 폐지
  - ⑥ 특허청 ⇨ 지식재산처로 확대·개편(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 ⑦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로 확대·개편
  - ⑧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 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차관 신설
  - ⑩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제2차관 폐지)
  - ⑪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 경찰의 독립성 강화 **■**

은 대리관계가 반복(복대리 ■)됨으로써 더욱 심해진다고 봄 ⇨ 대리손실의 형태에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음.

- ①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기준미달의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
  -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를 이용하여 대리인이 권력을 남용하여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자동차보험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방심 운전하다 사고가 빈발하고 보험료가 인상되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현상 또는 관료가 피규제집단에 포획되는 현상)
- (3) 결론 및 시사점(대리손실의 극소화방안) : 시장에서도 대리손실이 극대화되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듯이(시장실패), 정부(대리인)와 국민(주인)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정부실패)할 수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계약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보의 균형화, 대리인에 대한 감시·통제, 유인기제, 시장적 통제, 규범과 신념의 내재화 등에 의한 대리손실(대리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해야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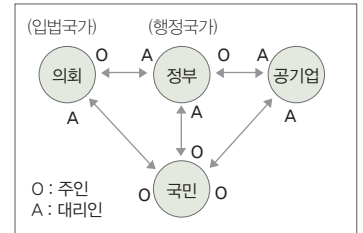
- ① 정보의 균형화 : 공공부문의 경우 대리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균형화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의 활성화가 중요 ⇨ 이는 결국 대리인에게 자율과 권한을 위임하기보다는 대리인에 대한 외부통제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 ■
- ②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 사소한 절차보다는 결과중심의 통제가 필요
- ③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이 거래비용(대리손실)보다 작을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므로 거래비용을 능가하는 충분한 성과급 지급 등 대리인에 대하여 엄격한 평가에 바탕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보수 현실화
- ④ 다수의 대리인과 계약 : 대리인 간 상호감시와 경쟁을 유도하고, 주인의 통제력 강화
- ⑤ 복수의 계약서안 제시 : 대리인이 선택(선호)하는 계약서안을 통해 대리인의 성향 파악
- ⑥ 신호발송 : 대리인이 주인에게 자신의 경력 등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역선택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⑦ 평판 : 대리인의 명성, 신뢰, 소문 등을 토대로 평가

(4) 평가

- ① 경제학을 토대로 인간의 이기심과 불신에 토대를 두고 있는 주인-대리인이론은 민영화 등을 지지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  
↳ 정부실패 설명에 응용
- ② 그러나 거래비용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 더 적합하고 형평성 등 비경제적 요인의 고려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과, 이기적 인간모형에 대한 전제도 언제나 적실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 수반 ⇨ 청지기 이론 4)의 합의 인식 필요

1 복대리

- ① 개념 : 주인-대리인관계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이 누적·반복되는 현상
- ② 내용 : 19C 근대입법국가 하에서는 의회가 국민의 대리인이었고, 20C 현대 행정국가 하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이 경우 의회는 정부에 대해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 즉 복대리관계에 놓이게 됨. 또한 공기업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주인인 정부가 대리인인 공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됨.
- ③ 활용 : 민영화를 지지하는 논거가 됨.



2 대리손실 최소화 방안

역선택 방지	신호발송	대리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주인에게 알림
	선별	주인이 다양한 시험·면담·평가를 통해 대리인 파악
	평판	과거의 실적·신뢰·명성에 따라 평가
도덕적 해이 방지	복수계약	서로 다른 여러 계약안(계약서)을 제시하여 대리인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자기선택기제 ⇨ 대리인의 숨겨진 성향을 드러내도록 하는 선별의 한 수단
	정보체계(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대리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보고체계 구축
	성과급	성과급 등 보수와 성과의 연계
공동지식	내부고발 보호	대리인의 부당행위 폭로자 보호
	감시감독	주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대리인 감독
	다수대리인	여러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호 경쟁·감시

3 외부통제력의 강화 예시

보험의 경우 자기선택을 제한하거나 강제보험제도가 역선택 방지 수단이 되고,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는 도덕적 해이 방지수단이 됨.

4 청지기 이론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은 인간의 이기성을 전제로 하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달리 대리인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내면화한 책임있는 '청지기'로서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 통제와 감시보다는 자율성과 신뢰부여가 더 효과적이라고 봄.

**1 결정론적 이론에 대한 비판**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의 강도는 구조적 상황론에 서처럼 늘 긴밀하기 보다는 관리자(의사결정자)의 환경 통제·조정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느슨한 경우도 있음. 동일한 환경하에서도 목표달성 방법은 관리자의 판단이나 지각 및 역량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고 주장하며 등중국성 제시

**2 전략적 선택과 마하트마 간디의 신발**



기차에 오르면 마하트 마간디가 신발한 짝이 벗겨지고 열차가 떠나자 나머지 신발마저도 플랫폼에 벗어 던진 일화는 상황을 적극 변화시킨 사례임.

**3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관리**

조직의 관리자들은 가능하면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과 재량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외부적인 의존관계를 관리하려고 함. 조직의 환경(다른 조직)에의 의존성을 극소화하기 위해 자원을 통제(합병, 적응적 흡수 등)하고 또한 다른 조직으로 하여금 자기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통제하여 권력을 획득함.

**4 C.Oliver의 조직관계 형성의 동기이론**

Oliver는 조직들이 왜 상호협력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

필요성 (필연성)	법률이나 규제 등 제도적 압력에 의한 협력
불균형 (비대칭)	타 조직을 지배하려는 권력욕구나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욕구에 의한 관계 형성(자원의존이론과 관련)
호혜성	상호이익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
효율성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거래비용경제학 관점)
정당성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협력(사회학적 신제도론 관점)
안정성	환경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

**7 전략적 선택이론**

(1) 의의

- ① 구조적 상황이론 등 결정론적 이론이 환경에의 '적합성 가설'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함. **1** 조직이 스스로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임의론적 이론(Child, Scott)
- ②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적 상황이 아니라 '재량권이 부여된 관리자의 자율적 판단이나 인지'라는 환경형성론적 입장. **2** 즉, 환경과 관계없이 관리자가 전략에 의하여 자율적·능동적으로 직접 판단·선택한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가 된다고 봄. ⇨ 동일한 상황하에서도 관리자의 지각·신념의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음.

(2) 평가

- ① 관리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경의 제약과 영향을 경시
- ② 전략이 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조가 전략을 결정할 수도 있음을 간과

**8 자원의존이론**

(1) 의의 :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생존의 핵심요인으로 보는 이론으로 전략적 선택이론의 일종

(2) 특징

- ① 어떤 조직도 필요한 모든 자원 획득이 불가능하며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관리자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상황요인이라고 봄.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이 관리자의 능력과 역량을 좌우한다고 전제
- ② 환경에의 피동적인 대응이나 조직의 내부적 관리보다는, 희소자원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능력과 그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주도적)인 환경관리를 중시(Hall) **3**

(3) 평가 : 환경의 영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상황론과 일부 유사하고, 전략적 선택이론과는 다름. 상황이 구조를 결정한다는 결정론을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상황론과 다르고 전략적 선택이론과는 유사함. 조직 간 협력을 중시하는 Oliver의 "조직관계 형성의 동기이론 **4**"과도 다름.

**9 공동체 생태학이론**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조직들의 공동적인 노력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조직을 생태학적 공동체속에서 상호의존적인 조직군들의 한 구성원으로서 파악함. 조직의 내적논리보다는 조직간의 공동전략(연대)에 의한 능동적 환경적응과정을 설명(Beard & Dess, 1988)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2024 지방9급

-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 ㄴ. 등록재산의 공개
- ㄷ. 종교 중립의 의무
- ㄹ. 품위 유지의 의무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ㄷ, ㄹ

ㄷ, ㄹ [X] 「국가공무원법」                      답 ①

1 행위제한 및 취업제한

	대상자	대상업무	제한
행위 제한 (업무 취급 제한)	모든 공직자	재직 중 직접 취급한 업무	퇴직후 취급 X
	취업심사대상자	기관 업무 기준 (2급 이상)	퇴직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급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 퇴직후 2년간 취급 X
취업 제한	부서 업무 기준 (4급 이상)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관련성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	퇴직후 3년간 취급 X
	비위면직자(부패로 해임·파면된 자)	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	퇴직후 5년간 취급 X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승인 시 업무 취급 및 취업 가능

2 금품수수 금지

금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직무관련 여부 X (대가성 여부 X)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위 금액 이하	직무관련 O (대가성 여부 X)	과태료 (2~5배)	
허용	① 외부강의 사례금 : 40~100만원 <sup>1)</sup> ② 소속공직자에 대한 위로·격려 목적의 금품 ③ 원활한 직무 또는 사교·의례 목적 일정한 가액 금품 :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조화·화환은 10만원), 선물 5만원(현금·유가증권 X)(농축수산물은 15만원) ④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⑤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⑥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1) 공무원은 시간당 40만원, 교직원·언론인 등은 100만원

직! 알아두기 법적 근거별 공무원의 의무와 윤리

자율규제윤리	공무원헌장	① 창의성 ② 다양성 ③ 투명성 ④ 전문성 ⑤ 공익성 ⑥ 청렴성 ⑦ 공정성 ⑧ 민주성 등
법령적·강제적 규제윤리	헌법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 의무 : 상관의 허가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⑥ 비밀엄수의무 : 재직 중·퇴직 후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 대통령 허가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기관장 허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sup>1)</sup>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4급 이상 등록, 1급 이상 공개 ② 선물수수율의 신고·등록의무 : 미화 100불, 한화 10만원 이상 ③ 퇴직자의 취업제한의무(재산등록의무자) :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④ 이해충돌방지 의무 ⑤ 주식백지신탁의무(1급 이상) : 3천만원 초과 시 ⑥ 퇴직자의 행위제한의무 : 업무취급제한 <div style="margin-left: 20px;">                     법 : 1,000 ~ 5,000만                      형 : 3,000만                 </div>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시 신고할 의무와 내부고발자 보호의무 ②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의무 :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 ③ 국민감사청구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sup>2)</sup>	① 공직자 등에 법령을 위반한 부정청탁 금지 ②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 명목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 처벌 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① 목적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②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③ 공직자의 범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립·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⑤ 고위공직자는 임용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용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⑥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⑦ 공직자나 직계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⑧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⑨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됨. ⑩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1 재정증권

재정증권은 국채에는 포함되나 일시차입금과 함께 당해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므로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음.

## 2 금융성채무와 적자성채무

국민주채금채권과 외환평형기금채권은 회수·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인데 반하여, 국고채·차입금은 조세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임.

## 3 GFSM

IMF 재정통계편람(Gov't Financial Statistics Manual)

## 4 SNA

OECD 등 국제금융기구가 작성한 재정통계지표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 5 우발채무

지급의무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채무로 발생주의 기반 국가재무제표에 정식으로 계상되진 않지만 추측에 표기되는 채무.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부채"에는 포함되며 보증채무 등이 대표적인.

## 6 총당부채

지급의무가 발생은 이미 하였지만 지급금액이나 시점은 불확정한 채무로서 발생주의 기반 국가재무제표에 정식으로 계상되는 채무. 우발채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부채"에는 포함되며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대표적인.

## 7 금융성기금

일반정부부채에 원칙적으로 포함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시장성, 정부통제 여부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금이 자율 판단 ⇒ 현재 우리나라는 제외

### 기술해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 국회8급

-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 ② 국가채무의 기관 포함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및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③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채무 규모이다.
- ④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 ⑤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되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국가채무"가 아니라 "일반정부 부채"에 해당

답 ②

## 2. 국가채무

(1) 정의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국가재정법」)

(2) 포함범위

일인보증

포함	제외
①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sup>1)</sup>	①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③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	④ 보증채무부담행위

1) 국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함(「국채법」 제5조). 국채의 종류에는 다음 4가지가 있음. 그러나 재정증권의 경우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음.

(3) 국채의 종류

국고채	세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국채
재정증권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년 만기로 발행하는 국채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금융성채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환율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외평채)

(4) 국가채무 · 국가부채 · 일반정부부채의 비교

	국가채무 (Gov't Debt)	국가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y)	일반정부부채 (General Gov't Debt)
작성기준	1986 IMF GFSM	1993 OECD SNA 기반 「국가회계법」	2001 IMF GFSM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국가재무제표)	발생주의
근거법률	「국가재정법」(협의)	「국가회계법」(광의)	법적 근거 없음(최광의) - 국제비교용
개념 범위	포함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채무(법정채무)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채무 + 우발채무 · 총당부채 등 불확정채무(미래채무) + 금융성기금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채무 + 지방정부 + 공공비영리기관 + 금융성기금
	제외 우발채무 · 총당부채 등 불확정채무, 지방정부, 공공비영리기관, 금융성기금	지방정부, 공공비영리기관	우발채무 · 총당부채 등 불확정채무

● 국가채무, 국가부채, 일반정부부채의 포함범위 비교

	국가채무(D1) <sup>1)</sup>	국가부채	일반정부부채(D2) <sup>2)</sup>	공공부문부채(D3) <sup>3)</sup>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우발채무(보증채무 등)	×	○	×	×
총당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	×	×
지방정부	△ <sup>1)</sup>	×	○	○
공공비영리기관	×	×	○	○
금융성기금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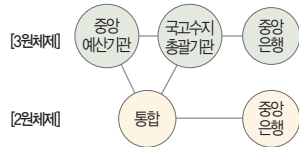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7급(수정)

- ①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②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수입·지출의 총괄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③ 김영삼 정부는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여 세제, 예산, 국고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 ④ 현재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대이다. 경제기획원이 중앙예산기관, 재무부는 국고수지총괄기관 답 ②

**1 재무행정조직**

국가의 재무행정조직에는 ① 국가의 세출예산을 결정·배분·총괄하는 중앙예산기관, ② 세입·결산 및 회계를 총괄하는 국고수지총괄기관, ③ 중앙은행이 있음. 이 중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아니면 통합되어 있으나에 따라 삼원체제(분리형)와 이원체제(통합형)로 구분됨.



**2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

과거(1998~2008) 우리나라는 중앙예산기관(기획예산처)과 결산관리기관(국고수지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을 분리·운영한 적이 있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되었다가 2026.1.2. 다시 분리·개편됨(3원체제)

**3 재정관련 업무 소관(2026.1.2. 시행)**

구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근거 법률
중앙예산기관(예산)	○		국가재정법
국고수지총괄기관(결산, 회계)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	○	공동소관
국가재정 운용계획	○		국가재정법
국가채무	○		국가재정법
국가부채		○	국가회계법
재정수지	○		국가재정법
d-Brain	○		
성과관리	○		국가재정법
조세지출		○	조세특례제한법
공공기관 지정·관리		○	공공기관운영법
채운기관 특별회계	○		채운기관법
민간투자	○		민간투자법

**3 중앙은행**

- ① 통화의 발행이나 공개시장 조작 등으로 국가 통화신용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국고금의 예수 및 출납업무를 대행함.
- ②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RB),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등

**더보기**

**● 재무행정조직의 삼원체제와 이원체제**

구분	개념	장점	단점
삼원 체제 (분리형)	① 대통령중심제형(예산기구 행정수반 직속형) ②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재무부(MOT), 연방준비은행(FRB)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①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단 ② 강력한 행정력 발휘 ③ 초월적 입장 견지 ④ 분파주의 방지	① 세입과 세출 간 관련성 저하
이원 체제 (통합형)	①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통합 ② 내각책임제형(예산기구 재무성 소속형) (☞ 영국의 재무성, 일본의 재무성, 과거(1994~1997, 2008~2025) 우리나라 재정경제원 및 기획재정부 ☞)	위의 단점과 반대	위의 장점과 반대

**●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구분	중앙예산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	비고
1948 ~	기획처 예산국	재무부	
1954 ~	재무부 예산국		기획처를 재무부로 통합
1961 ~	경제기획원 예산실	재무부	경제기획원 신설
1994 ~	재정경제원 예산실		경제기획원과 + 재무부 = 재정경제원
1998 ~	기획예산위 : 기획, 예산, 개혁 재정경제부 예산청 : 예산편성, 집행	재정경제부	예산기구 이원화
1999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 + 예산청 = 기획예산처
2008 ~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2026 ~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sup>1)</sup>

1) 이명박 정부 시절(2008) 중앙예산기능(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국고수지총괄기능(기획재정부 국고국, 세제실)이 하나의 부처(기획재정부)로 통합되었으나, 이재명 정부에 의하여 다시 분리·개편됨(2026.1.2. 시행)

1. 의의

- (1) 개념 :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
- (2) 목적 :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자는 것

2. 연혁

- (1) 서독 : 1967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
- (2) 미국 : 1974년 도입
- (3) 우리나라 : 중앙정부(2011)와 지방정부(2010) **에서 도입**

- ① 중앙정부의 경우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초보적 형태의 조세지출예산)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2011년에는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정식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함.
- ②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음. 동법 제142조의 2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 **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 ③ 2026년 부터는 조세지출결산서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2026.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 다음 연도 8.16.까지 재정부장관이 국회제출

3. 분류체계

나라마다 다르나, 우리의 경우 일차적으로 **기능별·세목별** 분류를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별**, 기타 기준(감면방법별, 산업부문별 등)을 적용함.

4. 장단점

(1) 장점

- ①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
- ②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성 파악** : 정부가 직접지출(예산지출)을 통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간접지출)을 통해서도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인식 **㉢**

1 지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

지방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

2 조세지출예산의 정확한 의미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이 실질적인 조세지출예산에 해당

3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과 제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의무와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국회제출의무는 재정운영일정상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 ① 작성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 재정부장관
- ② 제출의무 : 「국가재정법」 제34조, 기예처장관

4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과 제출

- ① 작성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3, 재정부장관
- ② 제출의무 :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 4, 재정부장관

5 조세지출예산을 통한 정책평가

조세지출예산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의 상대적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즉 조세감면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구분	재정성과 목표관리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제 <sup>1)</sup>	재정사업 심층평가제
개념	각 부처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자율 측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	기예치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예치가 확인·점검 <sup>1)</sup>	문제가 있는 사업을 기예치가 심층평가(일종의 메타평가)
대상	모든 사업	전체 사업	중복·낭비·비효율적인 사업
주체	각 부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도입 <sup>2)</sup>	2003년	2026년	2006년 <sup>2)</sup>

1) 2002년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가 시초

→ 사업평가측정기법

### 주의 [자율편성제도 등의 통제와 자율]

자율편성제는 일정한 지출한도내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이 보장되지만 기획예산처(재정당국)의 예산통제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출한도를 정해주므로 사전통제가 오히려 어느 정도 강화된 제도임. 또한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일 뿐 예산집행상 점검이나 통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하향식 예산이지만 분권화된 예산이라는 점도 주의

예산편성과정		예산집행과정	
거시적 요소 (장기계획 수립, 한도 설정, 전략적 배분)	미시적 요소 (한도 내에서의 예산 편성, 자금관리)	지출 항목·시기 등	점검 및 집행관리
사전통제 강화	통제 완화 ⇨ 자율 강화	자율성 강화	통제 강화 ⇨ 책임성 제고

#### [결론] 자율편성제도

- 통제 : 통제기능 상실 X, 통제기능 유지 O, 사전통제 어느 정도 강화 O
- 권한 : 집권 X, 분권 O
- 흐름 : 하향 O, 상향 X

###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 ⇨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제

- ① 재정사업자율평가는미국Bush행정부시절(2002)관리예산처(OMB)가 도입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가 그 시초이며 우리나라는 2005년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도입하였음. 미국 PART는 2010년 폐지
- ② 우리나라도 2026.5. 자율평가제가 폐지되고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제로 개편되었음.

### 2 우리나라 성과중심의 재정제도 도입연도

1994	총사업비
1999	예비타당성조사
2003	재정사업 목표관리
2005	자율편성제도, 통합재정.
2006	재정사업 심층평가
2007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d-Brain, 프로그램예산
2008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2010	조세지출예산, 성인지예결산
2016	통합성과평가

#### 기출체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2018 지방9급 등 총7회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고 있다.
- ② 각 중앙부처는 우선순위에 입각해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③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예산처는 예산통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 등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하향적 예산

답 ②

**기술체크**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2022 지방9급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
①	300	100
②	300	200
③	500	250
④	500	300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답 ④

**1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

- ①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 ②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 ③ 감사원이 감사결과 요청한 사업 등

**2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 ①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 가능
- ②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은 예타조사를 실시해야 함.

**3 신축성의 필요성**

- ① 정세변화에의 적응 :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상황이나 여건변동에 대응
- ② 경제안정화의 촉진 : 경제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기동적 역할 수행
- ③ 경비 절감 : 연말에 이월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용을 막기위해 무리한 지출 시도
- ④ 행정재량의 필요성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적절한 재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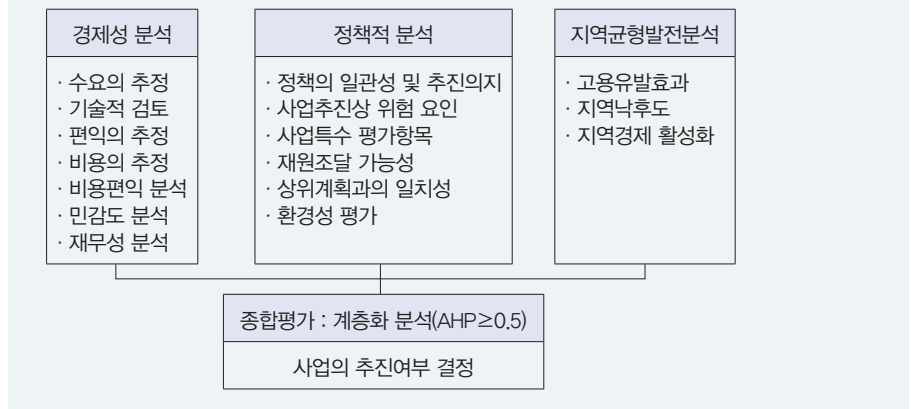
**꼭! 알아두기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비교**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개념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정하여 기예처장관과 협의·관리하게 하는 재정통제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예처장관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재정통제제도
목적	착수된(시작된) 대형사업의 총사업비 팽창을 막기 위한 사전적·과정적 통제수단 *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 시 기예처장관은 타당성 재조사 실시 및 국회에 결과 보고	대규모 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한 사전적 통제수단 * 중앙관서장의 신청 또는 직권, 국회의 요구로 기예처장관이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상임위에 예결위에 보고
도입시기	1994년	1999년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대상사업	국가가 직접 시행 또는 위탁사업, 국가예산·기금의 보조를 받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음 사업 <sup>1)</sup> 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토목 및 지능정보화사업 ②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건축사업 ③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연구개발사업 <span style="float: right;">■ 연건200</span> * 기예처장관은 위 대상 사업 등 일정 경우 타당성 재조사 실시 가능 ■  [제외대상] ① 국가재정지원이 증가하지 않는 정책 사업 ② 국고융자사업 ③ 민간투자사업 등	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중 다음 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 상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인 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 등 분야의 신규사업 <sup>2)</sup>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지능정보화사업 ③ 국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업 등  [제외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sup>2)</sup>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 국가유산 복원, 안보·보안관련 사업, 기존시설의 단순 개량·유지·보수 등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조사대상 사업에서 제외됨(2026.2.).

**더보기**

● 예비타당성조사의 흐름(요소)



**4 예산집행의 신축성**

이해+암기하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일어나는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 세출예산을 지출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이용·전용) 정하여진 금액을

**1 시행시기**

2025.10.1. 공포·시행(기획재정부 및 검찰청 분리·개편 제외)

**2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2026.1.2. 시행

**3 검찰청 분리·개편**

공포(2025.10.1.) 후 1년 뒤(2026.10.2.) 시행

**4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2025.8.26. 시행

<p>이재명 정부 <sup>1</sup> (2025~)</p>	<p>①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개편 <sup>2</sup></p> <p>② 검찰청 ⇨ 공소청(기소전담, 법무부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전담, 행안부 소속)으로 분리·개편 <sup>3</sup></p> <p>③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 및 제2차관 신설</p> <p>④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p> <p>⑤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 신설 및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겸) 폐지</p> <p>⑥ 특허청 ⇨ 지식재산처로 확대·개편(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p> <p>⑦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로 확대·개편</p> <p>⑧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p> <p>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차관 신설</p> <p>⑩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제2차관 폐지)</p> <p>⑪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 경찰의 독립성 강화 <sup>4</sup></p>
--	--

● 최근 정부별 주요 개혁 내용(운영체제 중심)

김대중 정부	<p>① 행정서비스헌장제도(1998)</p> <p>② 책임운영기관제도(1999)</p> <p>③ 공무원정원동결제도(1999)</p> <p>④ 개방형직위·공모직위제도(1999)</p> <p>⑤ 연봉제 도입, 국장급 이상(1999)</p> <p>⑥ 중앙행정관한 지방이양촉진법(1999)</p> <p>⑦ 주민감사청구제도(1999)</p> <p>⑧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1999)</p> <p>⑨ 부패방지법 제정(2002)</p>
노무현 정부	<p>① 지방분권특별법(2004)</p> <p>② 주민투표제(2004)</p> <p>③ 연봉제 과장급으로 확대(2005)</p> <p>④ 직무성과계약제(2005)</p> <p>⑤ 자율편성제도(2005)</p> <p>⑥ 주민소송제(2006)</p> <p>⑦ 공무원노조제도(2006)</p> <p>⑧ 고위공무원단제도(2006)</p> <p>⑨ 주민소환제(2007)</p> <p>⑩ 총액인건비제도(2007)</p> <p>⑪ 성과중심의 재정운용(2007)</p> <p>⑫ 국가재정운용계획(2007)</p> <p>⑬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2007)</p> <p>⑭ 프로그램(사업별)예산제도(2007)</p>
이명박 정부	<p>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p> <p>② 국가회계법(2009)</p> <p>③ 남녀평등예산제도(2010)</p> <p>④ 조세지출예산제도(2011)</p> <p>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통폐합</p>
박근혜 정부	<p>① 정부 3.0 추진</p> <p>②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p> <p>③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민안전처 신설</p>
문재인 정부	<p>①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2018)</p> <p>② 자치분권위원회 신설(2018)</p> <p>③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2020)</p>
윤석열 정부	<p>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p> <p>② 강원특별자치도(2023.6.) 및 전북특별자치도(2024.1.) 설치</p>

###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종류와 수 : 그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
- ② 지방 중요 직위의 선임방식 : 중앙에 의한 임명은 중앙집권적
- ③ 공무원의 구성 : 국가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
- ④ 재정의 규모 : 국가재정의 비중이 더 크거나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크면 중앙집권적
- ⑤ 중앙정부의 통제의 폭과 심도 : 통제강도와 빈도가 높으면 중앙집권적
- ⑥ 사무의 구성비율 : 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의 비중이 많거나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많으면 중앙집권적
- ⑦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 중앙정부가 민원사무의 상당부분을 관장하면 중앙집권적
- ⑧ 감사 및 보고의 횟수 : 중앙으로부터 감사나 보고요구의 횟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

### 2 단체장 불신임 및 의회해산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제1~2공화국에 걸쳐 일정기간(1949~1956, 1958~1960) 단체장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을 인정하던 시기가 있었음. 그러나 이는 기관통합형의 한 요소일 뿐 기관통합형의 형태를 취한 적은 한번도 없었음.

### 3 지방의회 선거와 단체장 선거

- ① 노태우 정부 : 지방의회는 구성(1991)
- ② 김영삼 정부 : 단체장 선거(1995)

### 4 공직선거법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주민 직선, 임기 4년,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주요 골자

### 5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3대 추진원칙

- ① 선분권·후보완의 원칙 : 지방분권으로 인해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도 먼저 분권조치를 취하고 사후 부작용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자정능력에 의해 보완
- ② 보충성의 원칙 :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정부에 사무 및 기능의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기능배분 원칙
- ③ 포괄성의 원칙 :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이양 대신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

② 그나마 1960년대 초 사회혼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 다시 부활하였으나 아직도 지방자치의 토대는 미약하며 여러 측정지표 1 로 볼 때 중앙집권적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사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

## 2 지방자치의 변천

### 1. 정부수립 이전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역사속에서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고려 초기의 사심관 제도나 향직단체라든가, 조선시대의 향청·향약·향회제도, 그리고 일제시대의 도회·부회제 등은 우리나라 역사상 지방자치적 요소로 볼 수 있음.

### 2. 정부수립 이후

####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

가볍게 읽기하기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 정국불안과 한국전쟁으로 1952년에서야 지방의회 구성, 의원민선, 자치단체의 장은 간선 또는 임명, 시·읍·면 자치
제2공화국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주민자치형의 법적 근거 마련, 의원 및 자치단체장 민선, 임기 4년, 기관통합형의 요소인 단체장 불신임 결의 및 의회 해산권 인정 2
제3공화국(5.16)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 지방의회 해산, 단체장은 국가가 임명, 지방선거제 중단, 시·군 자치제로 전환(1961)
제4공화국 (박정희, 유신헌법)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헌법」 부칙에 규정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지방의회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한다고 「헌법」 부칙에 규정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헌법부칙을 폐지하고 의회구성시한을 「지방자치법」에 1991.6까지 지방의회 구성, 1992년까지 단체장 선출하도록 규정. 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 지방의회 구성(1991)
김영삼 정부	「공직선거법」 2 제정(1994)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1995), 지방의원과 단체장 동시선거체제 도입(1995)
김대중 정부	2대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출(1998)
노무현 정부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일을 임기만으로 30일 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2004), 「지방분권특별법」 제정(2004) ⇨ 대대적인 지방분권 정책방향 및 로드맵 제시, 시·도 교육감 직선제 도입(2006),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도입(2006)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위 설치, 「중앙행정권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전면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자치경찰제 시행(2021) 등
윤석열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강원특별자치도(2023.6.) 및 전북특별자치도(2024.1.) 신설
이재명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2026.7.) 신설

## 3 지방분권 정책방향

- (1) 지방분권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기본이념으로 함.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3대 원칙 2 제시

(2) **보충성의 원리(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지역주민과 밀접한 말단 지방정부의 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기능에 한하여 상급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보완

● **보충성의 원리**

소극적 보충성	하급정부에 대한 상급정부의 관여 배제
적극적 보충성	하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수준 보장

(3)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원칙)** :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보다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

(4) **교육자치 개선** :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대

(5)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6) **지방재정 강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7) **자치입법권 강화** :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자율화

(8)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 :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

(9)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 주민투표(2004), 주민소송(2006), 주민소환(2007)의 도입

(10) **추진기구 설치** : 지방분권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 추진기구 를 둬.

(11) **일괄이양의 원칙** : 국가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법적 조치 마련 의무(46개법, 400여 개 사무를 일괄이양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공포(2021.1.1. 시행)

더보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이재명정부) -2026.6.2.시행-**

[제정이유]

이재명정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균형성장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둬.

[주요내용]

(1) 개요 및 방향

-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으로 변경
- ② 대통령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둬.
  -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2)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 자치경찰제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분권 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는 실현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자치경찰제(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2021.1.).

2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변천

정부	근거 법률	추진기구 (대통령 직속)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이명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치분권위원회
윤석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시대위원회
이재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	지방시대위원회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2020.2.18 제정·공포됨. 이로써 46개 법률, 460여 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일괄이양될 전망이다. 예컨대 지방한시시설 개발·운영에 관한 해수부장관의 권한, 지방문화원 운영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2021.1.1. 시행).

### 1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본래적인 고유한 자치계층이라면 광역자치단체는 보충적·보완적 자치계층임.

####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 또는 조정을 거쳐야 함. 또한 특별시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함.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2026.7.1. 시행)

- 전남과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
- 부시장 4인(정무직 국가공무원 2인, 정무직 지방공무원 2인)을 둠.
- 기존 시·군·구를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 인정

#### 4 광역시 요건

과거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주던 정치적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상」 법정요건은 아님.

#### 5 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단체

종래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동일하게 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 6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종래에는(2023.6.7. 이전)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특별자치시와 마찬가지로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개정(2023.6.7. 시행)으로 특별자치도에는 시와 군을 두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두지 않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2023.6.11.)와 전북특별자치도(2024.1.18.)에는 두고 있음.

#### 7 강원특별자치도(2023.6.11.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2.6.)됨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됨(2023.6.11. 시행). 이로 인해 앞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확대, 중앙부처사무 이양, 규제 완화, 특구 지정 등의 특례가 인정될 전망임.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특별법에 의하여 종전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함.

#### 8 전북특별자치도(2024.1.18. 시행)

-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요건 완화,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 부여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암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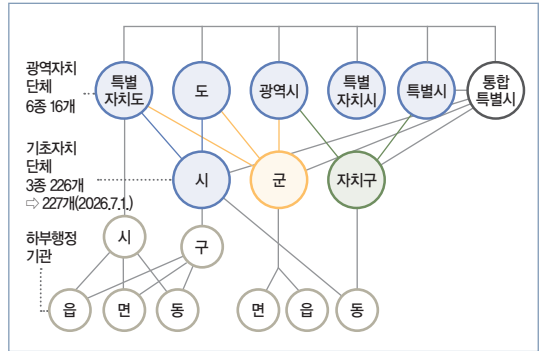
### 1. 광역자치단체

- (1) **의의** : 정부직할 자치단체로서 현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있음. 원칙적인 법적 지위는 동일하나, ㉠ 특별시(서울)의 경우 수도로서 일부 특례를 인정받고 있고, ㉡ 통합특별시(전남광주), 특별자치시(세종)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경우도 자치권특례가 인정됨.

### (2) 종류

- 특별시** : 수도로서의 행정 특수성에 입각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특례 2를 인정받는 시  
⇒ 「지방자치법」에 서울이 특별시로 규정된 것은 아님.
- 통합특별시** : 도와 광역시를 통합한 형태의 특별시로 관할 구역 안에 시·군·구가 있으며,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026.7.1. 출범)가 있음.

#### ●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 계층구조(2026.7.1. 현재)



- 광역시** : 대도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도(道)로부터 분리되어, 도와 동격의 지위를 갖는 광역자치단체 ⇒ 관할구역안에 자치구와 군이 있으며, 광역시의 요건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 4
- 특별자치시** :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안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함. 5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음.
- 도** :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가장 넓은 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안에 시와 군이 있음
- 특별자치도** 6 : 도 중에서도 특별법에 의하여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7, 전북특별자치도 8가 있음.

#### 주의 [자치단체의 종류·명칭과 근거법률]

어느 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할 것이냐, 어느 도를 특별자치도로 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종류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려면(특별자치시나 통합특별시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 없음.

#### [결론]

- 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법」
- 자치단체의 명칭 : 개별법(특별법)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2020 군무원9급 등 총 4회

-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② 경기도 성남시
- ③ 경상남도 창원시
-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귀포시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음. 답 ①

**1 특별자치도와 감사위원회**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자체가 특별자치도만의 특례는 아니나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2023.6.11. 시행)

- ① 행·재정상 특별 지원
- ② 주민투표 청구 특례 인정 :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30 ~ 1/5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 ↳ 일반자치단체는 1/20
- ③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 강원특별자치도 정원 5% 범위에서 허용
- ④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특례 인정
- ⑤ 기타 규제 완화 및 자치조직권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전북특별자치도법」 2024.1.18. 시행)

- ①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요건 완화,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 부여
-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 ■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④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특례 부여 가능
- 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특례(2026.7.1.)

- 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 : 관내 기존 시·군·구 유지
- ②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 ③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 설치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및 신설 금지
- ⑥ 부시장 4인을 둠 : 행정부시장 2인(국가정무직), 정무부시장 2인(지방정무직)
- ⑦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정무직 부시장 등
- ⑧ 행안부장관 승인 없이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가능 등
- ⑨ 관내 시·군·구의 경우 종전 지방세목을 그대로 인정

🗣️ 주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통합특별시의 비교]**

		[기초단체]	[감사위]	[자치경찰단]	[지원위원회]
특별자치시	세종	X	○	X	○
	제주	X	○	○	○
특별자치도	강원	○	○	X	○
	전북	○	○	X	○
통합특별시	전남광주	○	○	X	○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 (1) 원칙적·형식적 대등관계 : 법상으로는 대등한 법인이고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2) 부분적·실질적 상하관계 : 어느 정도는 상·하관계 존재
  - 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됨.
  - ②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 예·결산확정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함.
  - ③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지도·시정명령·재의요구 등 통제가 가능
  - ④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http://www.kaspa.co.kr) TEL. 02-532-5280  
[gong.conects.com](http://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7년 6월 29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가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루미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91-9  
ISBN 979-11-92405-90-2(세트)  
값 49,000원 (전3권)

